

의안번호	제호
의결 연월일	2023. . . (제회)

의결사항	
------	--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3. 5. 12.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5. 12.

제 출 자: 고성군수

1. 제정이유

고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 및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지원대상 (안 제1조 ~ 제2조)
- 나. 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예방접종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지원절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 마.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2조, 제16조
 -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 3)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
 - 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나. 예산조치: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보 예정

다. 합 의

- 성별영향평가: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복지지원과-14828(2023. 4. 11.)]
-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사회보장제도 협의 제외 대상임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3-3호
 - 가) 예고기간: 2023. 3. 30. ~ 2023. 4. 19.(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고성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이고, 횟수는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제4조(지원 금액)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성군 소재의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보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환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관련 조문: 안 제2조 ~ 제4조

나. 비용발생 요인: 고성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다. 소요예산(5년평균): 100,000원×580명 = 58,000천원

※ 백신비용: 100,000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인구: 1,617명(2023. 1월 기준)

- 1차 연도: 100,000원×¹⁾320명×1회 = 32,000,000원

- 2차 연도: 100,000원×²⁾780명×1회 = 78,000,000원

- 3차 연도 이후: 100,000원×³⁾600명×1회 = 60,000,000원

(단위: 명,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총합계 (평균)
접종(예상)인구	320	780	600	600	600	2,900 (580명)
소요예산	32,000	78,000	60,000	60,000	60,000	290,000 (58,000)

¹⁾²⁾³⁾접종대상은 매년 접종완료자 제외 및 당해연도 신규 65세 이상 인구를 고려하여 측정함.
1회차(2023년)는 20%, 그 외 차수(2024년 ~ 2027년)는 60% 접종률을 목표로 산정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의 제정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비는 연간 58,000천원으로 예상되며, 수반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보건행정과장 조석래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 외의 다른 공공보건 의료사업에 대하여도 그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8.>

□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노인의 건강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요양(療養)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①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지급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경우 유족의 순위는 전단에 열거된 순위(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에서 전단에 열거된 순위에 따른다)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에 피해구제급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또는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 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신청인이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 사용목적,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
- 나.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소견서 등 신청인이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 다. 별지 제10호서식의 투약내역서(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발행한 서류로서 투약 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 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진료확인서(진료비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하며, 의료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진료 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 마.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자료(장애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 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및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망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 사. 그 밖에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 증명에 필요한 자료

2. 장례비의 경우

-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1부(장례비와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미지급 진료비 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 1. 지급대상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의 서류
- 2. 신청인이 미지급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순위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 3. 신청인이 사망한 지급대상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4. 제3항제1호 각 목의 자료 중 진료비 및 장애일시보상금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자료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1. 21.>